

법학과의 교육현황과 개선방향

권 형 준

한양대 법학과 교수



1. 글머리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법학교육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된다.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밀려온 근대화의 물결은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케 하고, 동시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관양성소규정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의해 설치된 법관양성소는 근대적 법학교육기관의 효시로서 20세 이상의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나 관공서의 현직관리 중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을 가르쳤다. 이렇게 시작된 근대적 법학교육은 우리의 고유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구의 법제도를 내용으로 하면서 일제와 해방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4년제 대학의 법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고, 그동안 양성된 법률전문인력은 법조계를 비롯한 관계·기업계·금융계·언론계·학계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가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급속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변화하게 되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다원화·국제화를 요구하는 추세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4년제 대학 법학과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법학교육의 특성

대학에서 법학과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법학의 교육을 담당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사회, 특히 국가는 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법률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법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법학교육 이수자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법학교육 이수자들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정의관념, 합리적인 판단력, 철저한 논리적 사고력과 탁월한 분석력 등을 바탕으로 다른 인접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각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학 전공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체계가 정비된 선진국일수록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점차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분쟁형 사회로 이행되고 있어 법학전공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법학교육의 중요성과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법학과의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시되고 있다. 다만 법학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른 학문분야와는 달리 교육목적의 정립문제를 비롯하여 교육에서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법학교육의 목적 설정

법학은 오직 진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학문이다. 그 결과 우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법학교육은 그 목적 여하에 따라 전문직업교육과 일반교양교육으로 구분된다.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은 전문직업인인 법조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연히 그 교육내용은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한편, 일반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은 법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내용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대체로 일정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성문법전을 위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성문법에 의거해서 연혁적으로 법원칙을 실제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의 대륙법제에 속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교육제도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유럽식을 따라 이론교육은 대학의 법학과가 담당하여 실정법규의 해석을 위주로 주입식 강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실무교육은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이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법학도가 실정법에 규정된 원칙을 이해한 후 실무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대학에서의 교육비용이 절감되며, 시류에 매몰지 않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본래 실천적 학문인 법학의 교육을 이론과 실무로 분리시켜 이론 위주로 행하는 법학교육은 실제와 유리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그치게 될 위험이 따르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할 만한 실용적인 법학지식을 전수하지 못한다

는 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학과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법학교육을 이수한 법학도들이 진출하는 주요 사회분야는 법조인, 행정공무원, 기업계, 언론기관, 금융기관, 학계 등 대단히 다양하다. 이처럼 법학과 졸업생의 장래 진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목적을 오직 법조인 양성교육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원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법학교육의 요구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이론교육에만 치우쳐서는 아니되고, 대학에서 습득한 법학지식이 사회에 진출하여 실제 응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무교육이 병행되는 교육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4. 법학과의 교육현황

1) 법학과의 설치 현황

1995년 현재 전국에는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하고 78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분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84개에 이른다. 이들은 법학대학·법정대학·법경대학·사회과학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학과 단일학과로 단과대학을 형성하여 독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법학과를 다시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의 예에서도 법과대학은 법학과 단일학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체 대학의 현재 법학과 학생총수는 대략 33,000명에 이르고, 법학과의 입학정원은 대략 7,5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과 평균 입학정원은 약 90명에 불과하게 되어 일본의 약 440명, 미국의 약 250명에 비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입학정원이 40명 미만인 법학과가 46개이고, 입학정원 100명 이상인 학과는 15~16개이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과는 영세규모 내지 중간규모의 학과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 결과 법학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과목이나 전문과목의 설치 및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 교수수 및 물적 시설

법학과가 개설된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법학교수는 1995년 현재 670여 명으로 학과당 평균 8명 정도이다. 그러므로 법학교수 1인당 학생수가 44명에 이르러 일본의 20명, 영국, 미국의 10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체 법학교수 중 530여 명이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 등 소위 기본법률 과목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별법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에서 요청하는 전문 특수분야의 법학교육을 대학에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대학에서는 기본법률 과목을 위주로 교육하고 다시 이를 사회에 진출한 후에 기초로 하여 각종 전문특수분야의 법률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법학교육을 위한 물적 시설의 측면도 보잘것이 없다. 전국의 법과대학 중 전용도서관을 구비한 대학은 단 1개뿐이며, 각 대학이 비치하고 있는 각종 법학연구용 도서도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하물며 법률문헌·판례색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거의(전혀) 없다. 결국 시설 면에서 보아도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대학에서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학제 및 교과과정

현재 법학과의 학제는 4년의 수업연한으로 되어 있다. 1학년은 교양과목을 위주로 하고, 2학년부터 3년간 법학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4학년이 되면 사법시험준비나 취업준비 및 사원연수 등으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전공과목의 실제 학습기간은 겨우 2년에 그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학습기간을 더욱 단축시키면서 법학교육의 충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법학과의 교과과정상 졸업이수학점은 현재 140학점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160~180학점이었으나 실험대학 운영으로 이와 같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교육법에 따른 교양과목의 의무적인 이수학점을 제외하면 법학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90~110학점에 불과하게 된다. 더구나 비법률과목인 일반사회과목 등이 법학과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과 졸업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전공필수과목은 40~50학점에 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법학과를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 법률과목의 학점이 부족해짐에 따라 대다수 법학과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소법·형소법 등 사법시험 과목을 위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이수학점을 150학점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교과과정 편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4)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은 사법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이 대학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아무런 관련없이 운용되고 있어 법학교육상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이수자가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학에서의 학업성과를 사법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더욱이 사법시험 과목도 소위 기본법인 6법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내용도 각 과목의 원론 범위에 속하는 암기 위주의 논술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학과의 학생들은 대학의 강의실보다 고시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오직 시험준비에만 전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험법학 및 고시학원이 성행하는 등 대학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종속되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졸업생의 진로

법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 상황을 보면 법조계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관청, 금융기관, 언론기관, 일반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문교통계연보에 의하면 1988년도 법학과 졸업생 5,014명 중 군입대자를 제외한 순수 취업자가 2,042명에 이르러 40.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법학과 졸업생의 진출분야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고 심지어 비법률분야에서도 법학과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현대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생활관계가 보다 증대하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법학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소양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학과 졸업생 중 법조계로 진출하는 비율은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인원이 300명에 불과하여 법학과 전체 졸업생 5,014명의 6%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준이며, 그것도 기졸업자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법학과 졸업생의 이러한 사회진출 현황을 고려할 때, 법학교육 목적의 정립이나

교과과정 편성 및 교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법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상응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인 바, 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적의 명확한 정립

법학교육의 목적을 일반교양교육으로 할 것인가, 전문직업교육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학교육의 학제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법학교육의 교육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학제에서 법학교육은 일반교양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실제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래 실천적 학문인 법학의 성격 및 법률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보면 법학교육은 전문직업교육으로 함이 마땅한 것이며, 이처럼 법학교육을 전문직업교육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연한을 6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확보, 학계와 실무계와의 교류 증대, 교수방법의 개선, 교과과정의 확대개편, 교육자료와 시설의 확충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아직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일반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전문직업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 확보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법학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학과의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문교육으로서 법학교육은 그 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따라서 다른 학과와는 달리 법학과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영세한 학과의 설치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법학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영세 법학과의 통·폐합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학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법학교수의 확보가 요청되며, 앞으로 법학교육을 전문직업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최소한 20인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의 확보에 있어서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특별법 분야를 담당할 교수와 전문법학교육에서 실무교육을 담당할 실무법조인 출신 교수에 대한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시설 측면에서도 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수적인 법학도서를 충분히 갖춘 전문도서관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조교와 전문사서의 배치, 법률문헌과 판례 검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전문직업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3) 학제 및 교과과정의 확대개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4년제로 되어 있는 법학과의 학제에서 법학교육은 비록 전문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반교양교육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차 법학교육의 목표를 전문직업교육으로 전환하여 더욱 충실한 법학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4년의 수업연한을 최소

한 5년 내지 6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수업연한의 연장문제는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과 법학과 졸업생의 진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4년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법학과 학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지금의 140학점에서 최소한 160학점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140학점으로 유지해서는 기본법학과목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까지도 곤란하게 되고, 나아가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특수법 분야의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교양교육으로서 법학교육의 실효를 기하기 위해서는 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160학점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본법 과목의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면서 실무 및 특수법 분야의 교과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의 연계적 운용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와와의 연계적 운용이 요청된다. 현재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법학과의 법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법학교육을 파행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인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과의 일정 수업연한 이상의 이수자로 한정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성과를 법조인 선발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의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학교육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학계와 실무계와의 교류 증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없어서 학문발전과 법문화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수들도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실무법조인들도 대학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여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 속에서 실천적 학문인 법학의 발전과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법학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법학과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것처럼 어려운 연구·교육 여건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온 선배 법학교수들의 고충과 노고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결코 그들의 업적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것은 오직 국가사회의 발전에 상응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위두,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법학교수회 편, 1992, pp. 43~48.
김철수, “법학교육연구의 개선방향”,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1992, pp. 3~13.

양 건, “법학교육,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1992, pp. 14~33.

양승규·이재상·양건, “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1992, pp. 49~69.

양승두, “우리나라 법학과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1992, pp. 34~42.

한상호, “법조개혁의 현황과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1995년 7월호), 한국법학원, pp. 9~33.

권형준/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지방자치선거법 해설』(공저), 『요해 헌법』 등이 있고, “프랑스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0-7942, 783-3891,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교수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